

## Deloitte Newsletter



2013 년 6 월

###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한-바레인 조세조약 발효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바레인 조세조약이 4월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발효로 인해 2013년 4월말을 기준으로 총 89개국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고정사업장: 건설분야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시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25% 이상 지분 보유 시는 5%), 이자 5%, 사용료 10%
- 조세정보교환: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요청 가능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세청,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박차

미국·영국·호주의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 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한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세청 담당 과장이 해외 출장 길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주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명단 공개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3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인상
-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 명확화  
관세조사 통지 등을 받고 수정한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배제하고, 부가세 징수·환급 일을 기준으로 발급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수혜법인이 외투법인인 경우 과세제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을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Tax 판례]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룰 수 있음(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 두 11733 판결)**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자, 원고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액경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고 매출액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룰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룰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논거로 증액경정처분은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증액경정사유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을 각각 거칠 필요 없이,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Tax 판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 구합 32949 판결)**

D 사는 정보기술 서비스업체인 S 사에 시스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고, S 사는 이 중 일부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D 사는 2008 년 및 2009 년에 지급한 용역비 전체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재위탁으로 인하여 제 3 자가 수행한 용역에 관한 비용 전체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수탁업체에 지급된 용역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은 첫째,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함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며, 둘째,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수탁업체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보유는 세액공제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2012 년 이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이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재수탁업체의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관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ax 판례]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차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 두 8178 판결)**

대법원은,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들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면제해주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이와 같이 면제된 차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도 덧붙였습니다. 공급조건 불이행에 따라 공급가액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터키 FTA 5월 1일 발효**

지난 2010년 3월 한-터키 FTA 협상이 출범한 이후 4차례의 공식 협상 및 3차례의 소규모 협상을 통해 2012년 3월에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까지 마치고 드디어 5월 1일에 한-터키 FTA가 발효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한국과 터키 양국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됩니다. 수출입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원산지기준의 경우 기존의 한-EU FTA와 거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원산지증명 방식은 한-EU FTA보다 완화된 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터키는 ①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②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향후 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 ③1957년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의 對 터키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측면에서 우리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 FTA 발효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중소기업 FTA 사후검증 및 원산지 관리 총력지원**

그 동안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FTA 활용 기업 중 많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미 활용기업도 기업 수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등 여전히 FTA 활용이 저조한 기업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3년 제1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1) 기업의 검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후검증 대비 지원, 2) FTA 활용 미흡 기업군에 대한 애로사항 확인 3) 자율적으로 검증 대비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TOOL\*”을 보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FTA 중소기업 지원 대책(SG 500 Project)”을 논의하였습니다.

- 한-미 FTA 활용률: (발효 후 3월) 59.4% → (6월) 62.1% → (9월) 68.8% → (12월) 70.2%

## 삼성, 대규모 인수합병 발걸음 빨라질 듯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이 하락과 갤럭시 S4 판매부진에 따른 JP 모간의 목표주가 하향조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도 하락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하락의 시그널을 통해 위기경영 차원에서 기존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은행(IB)업계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사업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삼성전자의 변신 노력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전자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 부문 등 신수종사업 육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벌써부터 IB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발(發) 대규모 인수합병(M&A) 시장이 열릴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에너지공기업 대수술...해외 M&A 사업 정리될 듯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가 지난 5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 동안 3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방만한 투자사업 합리화를 위한 3 가지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효율성에 따라 부문별로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역량에만 집중하도록 하며, MB 정부에서 추진돼온 '순쉬운 해외 M&A' 사업을 대폭 정리해 직접 탐사·발굴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수합병(M&A) 사업 정리 등 대대적인 수술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http://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https://www.facebook.com/DeloitteKorea)